

'23년도 기사 제1회 필기시험 관련 응시자격 및 원서접수에 대한 안내

'23년도 기사 제1회 필기시험 관련 응시자격 및 원서접수에 대한 안내사항(①응시자격기준일, ②응시자격 갖춘자의 정의, ③원서접수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수험자 여러분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원서접수 및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기준일은 수험자가 응시하는 종목의 필기시험일"에 대한 의미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4조)** 증명서류(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심사의 기준일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 (시행계획 공고문) 응시자격서류심사의 기준일은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의 필기시험일
 - => 즉, 수험자는 본인의 필기시험일에 응시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응시자격서류는 '23.3.31.까지 제출해야 함
 - ※ 원서접수 시 본인의 응시자격을 충족하는 시기를 고려하여 필기시험일을 선택·접수하고, 착오 접수시 수험자 귀책사유임을 유의

♣ 2월까지 응시자격을 갖춘자와 3월부터 응시자격을 갖춘자의 정의

- (2월까지 응시자격을 갖춘자) 수험자 개인별 2월 시험일자(2.13~2.28.)에 또는 그 전에 응시자격을 갖춘자
 - 학력 : 관련학과 기(旣)졸업자, '23년 2월 졸업예정자, 최종학년 기(旣)수료자, 최종학년 1/2 기(旣)수료자(4년제 재학생이 산업기사 응시 희망시)
 - 경력 : 관련 경력을 이미 갖춘자, 2월중에 관련 경력을 갖추는 자
 - ※ 수험자의 필기시험일 이전에 학력을 충족(졸업, 수료 등)하거나 경력을 충족하여야 하며, 관련학과 '23년 2월 졸업자의 경우 이미 최종학년 재학 신분으로 응시자격이 갖추어 짐에 따라 '23.2.28.에 졸업하더라도 2월중 졸업일자 이전에도 시험응시 가능
- (3월부터 응시자격을 갖춘자) 수험자 개인별 3월 시험일자(3.1~3.15.)에 응시자격을 갖춘자
 - 학력 : '23년도 3월부터 관련학과 최종학년에 재학(휴학,재적 등)하는 자
 - 경력 : '23년도 3월중(3.1~3.15.)에 관련 경력을 갖추는 자
 - ※ 경력의 경우, 수험자의 필기시험일까지 경력을 충족하여야 함





♣ 응시자격 구분에 따른 원서접수 일정

- 『'23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공고』에 따라 기사 제1회 필기시험 원서접수는 2월 시험시행, 3월 시험시행으로 구분하여 접수하며,
 - 2월까지 응시자격을 갖춘자 : '23.1.10~1.13.에 2월 시험(2.13~2.28.)에 접수
 - 3월부터 응시자격을 갖춘자 : '23.1.16~1.19.에 3월 시험(3.2~3.15.)에 접수
 - ※ 종목별 시험시간에 따라 시행 일정은 한정 될 수 있음

♣ 2월까지 응시자격을 갖춘자의 3월시험 응시 가능 여부

- 부득이한 사정(출장, 입원 등)이 있는 경우(별도 증빙 불요), 3월시험 접수 가능
 - 응시자격 여부로 시험일정을 구분한 이유는 3월까지 응시자격을 갖추는 수험 인원이 대부분이고, 모든 수험자들이 3월시험에 몰릴 경우, 접수 인원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활한 원서접수 관리를 위해 구분하였음
 - 만약 2월까지 응시자격을 갖춘 수험자가 3월시험에 접수하는 경우, 서버 과부하, 좌석마감 등으로 응시자격 때문에 3월시험에 응시해야만 하는 수험자의 원서 접수가 불가할 수 있음에 따라 가급적 부득이한 사정(출장, 입원 등)이 아닌 경우에는 2월시험 접수 요망
- ◈ 응시자격 사례별 원서접수 예시 -
 - ▶(사례1) 전기산업기사 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자가 이미 '22년도에 전기산업기사 응시자격 서류 승인을 받고 시험응시를 한 사례가 있을 경우, 시험응시 가능 일자는?
 - 해당 수험자는 이미 응시자격을 갖춘자로 2월까지 응시자격을 갖춘자로 분류 되며, 2월중 시험일자에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시험응시를 하면 됨
 - ▶(사례2) 전기산업기사 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자가 2년간의 관련 경력으로 응시자격을 갖추고 시험 보기를 원하는 경우, 2년 경력이 '23.2.20.에 충족될 때 시험 볼 수 있는 일자는?
 - 해당 수험자는 2월까지 응시자격을 갖춘자로, 2월중 시험을 응시하여야 하고, 2년 경력이 충족되는 '23.2.20. 이후 일정에 시험을 응시하여야 함
 - ▶(사례3) 전기산업기사 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자가 2년제 대학 관련학과 재학중이고, '23년 3월에 최종학년(2학년)이 되는데 시험을 언제 봐야 하나요?
 - 해당 수험자는 '23년 3월에 최종학년 재학이 가능한 자로, 3월부터 응시자격을 갖춘자에 해당하며, 3월 중 시험일정에 응시하면 됨
 - 그리고, 응시자격서류는 '23년 3월 이후에 2학년(최종학년) 재학증명서 발급이 가능함에 따라 '23년 3월 이후 재학증명서를 발급하고 제출해야함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별첨] 응시자격 및 원서접수 관련 0&A

〈응시자격 관련〉

【질의1】 2월까지 응시자격을 갖춘자가 3월에 응시가 가능한가요?

【답 변】

- 『'23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공고』에 의하면, "①1.10~1.13(2월까지 응시자격을 갖춘 자) 2월 시험시행, ②1.16~1.19(3월부터 응시자격을 갖춘자) 3월 시험시행에 따라 구분 접수되며"로 안내됨
 - 따라서, 2월까지 응시자격을 갖춘자는 2월 시험시행이 원칙이며 2월 시험에 접수하여야 함
 - 다만, 부득이한 사정(출장, 입원 등)이 있는 경우(별도 증빙 불요) 3월시험 접수 가능

【질의2】수험자가 언제 응시자격 여부를 갖추는지 확인할 방법은 있나요?

【답 변】

- 사전 확인은 "큐넷-응시자격 자가진단"에 입력한 정보 등을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음
 - 단, 학력에서 최종학년 재학(휴학, 재적 등)의 경우 학적 변동 시기는 고려할 수 없음을 유의

【질의3】 '23년도 2월에 대학교를 졸업하는 경우, 2월에 응시해야 하나요?

【답 변】

○ 2월까지 응시자격을 갖춘자이기 때문에 2월 시험에 접수하는 것이 맞고, '23년 2월 졸업자는 졸업하기 전에 이미 최종학년 재학생이기 때문에 졸업일자가 '23.2.28.이라도 '23.2.13.에 시험응시 가능





【질의4】 3월이후 응시자격을 갖추는 자가 2월에 접수하여 시험을 응시해서 합격(예정)하는 경우, 응시자격 합격은 가능한가요?

【답 변】

- 응시자격서류심사의 기준일은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의 필기시험일임에 따라 3월이후 응시자격을 갖추는데 2월에 시험을 응시하면 응시자격 요건 충족 불가로, 필기시험 불합격으로 처리됨
 - 따라서 원서접수 시 수험자 본인의 **응시자격을 갖추는 일자를 정확히 인지**하고, **시험일자를 선택·접수**하는 것이 중요함
- 【질의5】 응시자격 요건을 2.28.에 충족하는 수험자가 2.13.에 시험을 응시한다면 합격이 가능한가요?

【답 변】

○ 응시자격서류심사의 기준일은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의 필기시험일임에 따라 2.28일에 응시자격을 갖추는데 그 전인 2.13.에 시험을 응시하면 응시자격 요건 충족 불가로, 필기시험 불합격으로 처리됨

〈환불 관련〉

[질의6] '23년 기사 제1회의 경우, ① 1.10~1.13에 원서접수 하고 ② 1.16~1.19에 접수취소 하면 100% 환불 가능한가요?

【답 변】

-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해당 수험자에게 수수료 **전액 환불이 가능**하고,
 - 원서접수 기간을 분리한 것은 2월, 3월 수험자의 원활한 접수를 위한 것으로 회차 분리가 아니기 때문에 100% 환불 가능
 - 원서접수 기간(1.10~1.13, 1.16~1.19.)에 주말(1.14~1.15.)은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주말(1.14~1.15.)은 환불 불가**





【질의6-1】'23년 기사 제1회의 경우, ① 1.10~1.13에 필기원서접수한 자와 ② 1.16~1.19에 접수한 자는 언제까지 50% 환불이 가능한가요?

【답 변】

- 회차분리가 아니기 때문에 2월, 3월 시험일정 구분없이 시행초일은 '23.2.13이며, 시행초일 기준 5일전('23.2.8.)까지 50% 환불 가능
 - 따라서 3월 시험에 접수한 수험자도 '23.2.8.까지 50% 환불이 가능함
 - 시행초일 기준 5일전까지 50% 환불 가능함에 따라 해당기간 내에 있는 주말에도 50% 환불 가능

〈기타〉

【질의7】'23년 기사 제1회의 접수 일정이 구분됨에 따라 2월, 3월 각각 동일 종목 응시가 가능한지?

【답 변】

- 동일회차에 동일종목은 중복접수가 불가함
 - 2월 3월 시험일정을 구분하여 원서접수 일자를 나눈 것일 뿐, 동일회차 시험임에 따라 2월, 3월 각각 동일 종목 중복접수는 불가함

【질의7-1】'23년 기사 제1회의 접수 일정이 구분됨에 따라 2월 A종목, 3월 B종목 응시가 가능한지?

【답 변】

- 동일회차에 여러 종목 응시는 가능함
 - 다만, 종목별 응시자격을 갖추는 시기를 확인하고, 2월 또는 3월에 응시 하는 것이 중요함
 - 기타 응시자격 관련에 대한 질의는 상단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





【질의8】 응시자격이 없는 서비스분야 종목은 2월, 3월 중 원하는 날짜에 접수하면 되나요?

【답 변】

- 응시자격이 없는 시험에 대한 조건 안내가 별도 없음에 따라, **종목별** 지정된 일정(2시간 이하, 2시간 초과 구분)에 맞춰 원서접수 가능
 - 일반적으로 서비스 종목이 응시자격이 없는 시험으로 분류되고, 임상 심리사2급의 경우, 응시자격이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2월 시행, 3월 시행으로 구분하여 접수해야함
- 【질의9】 원하는 종목의 응시일을 각 시행 일정(2월까지 응시자격을 갖춘자: 2.13~2.28), (3월부터 응시자격을 갖춘자: 3.1~3.15) 내에서 선택하여 응시 가능한가요?

【답 변】

- `22년 시행한 회차(`22년도 기사 제3,4회 필기시험)와 동일하게 각 시행 일정(2월까지 응시자격을 갖춘자: 2.13~2.28), (3월부터 응시자격을 갖춘자: 3.1~3.15) 내에서 종목별 시험일정은 종목별 시험시간(2시간 이하, 2시간 초과)에 따라 한정 될 수 있음에 유의
 - **종목별 세부 시행 일정은 12월 말** 『'23년도 기사 제1회 필기시험 원서접수 안내문』 **공고 시 안내 예정**